

1964. 12. 5. 서울특별시 용소제 408호중 4. 용소관바탕은
 두리저리검리의 용대문리자 한리처용종 다음과같이 변경한다.

변경할 수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책과 및 양해자청 권설와에 비치
 하의 간제인의 동람에 용한다.

기				후				비고
용역	지번	리주	면적	용역	지번	리주	면적	
용인용	200~6	대	285.70	용인용	200~6	대	269.00	(-16.70) 불확
"	200~29	대	103.90	"	200~29	대	120.60	(+16.70) 제신부

1965. 9. 30
 서울특별시 시장 윤 지 영

안 2

수신 용대문 지형장
 제동 갈 음

방신 시장

1. 1964. 12. 5. 서울특별시 용소제 408호중 4. 한리처용 관
 바탕은 두리저리검리의 용대문리자중 일부한리에 대하여 별지와같이 변경
 한면이니 다음사항에 착수할수록 처리하시기 바람.

가. 별첨 용소문을 사본하여 지형및 수할 등사우소에 제출할것

나. 별첨 한리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형권설와 및 통우와에 비치

한제부리검리에 배심및 수할 하의 간제인에 동람에 용할것

유림. 1. 용소문 1 동

2. 한리변경수면 1 대

안 4

수신 영수실장
제 목 같 음

발신 도시계획국장

서울도시계획사업 용대용지구중 일부권지에 대하여 별지
영수증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시위에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첨. 영수증 1 통

안 4

수신 기획관리과장
제 목 같 음

발신 서울외과장

기타대리 관할의 권한인 도시기획관리 용대용지구내 승인용
200~6. 용200~29. 환리처분중 별지 영수증과 같이 일부변경하였기
로신합니다.

우첨. 영수증 1 통

안 6

수신 레신부감판
제 목 같 음

발신 시 각

1. 레판판 415-0960(65. 9. 14.) 호의 회신입니다.

2. 964. 12. 5. 서울특별시 영수제 408 533내 환리처분 관
한영수증 도시기획관리 용대용지구내 승인용 200~6. 용200~29
권지에 대하여 별지 영수증과 같이 지적을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첨. 영수증 1 통

2. 환리변경 수면 1 면

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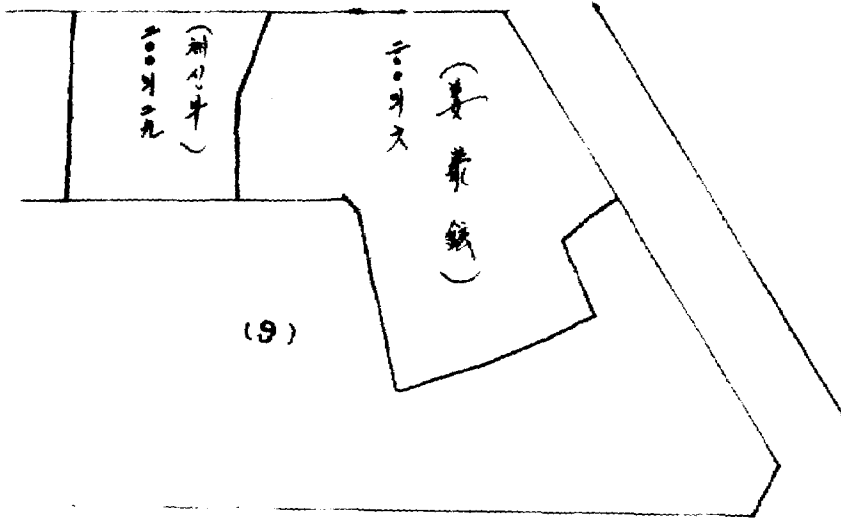
수신 동대문구 송인동 200~1
세유 갈 음

발신 이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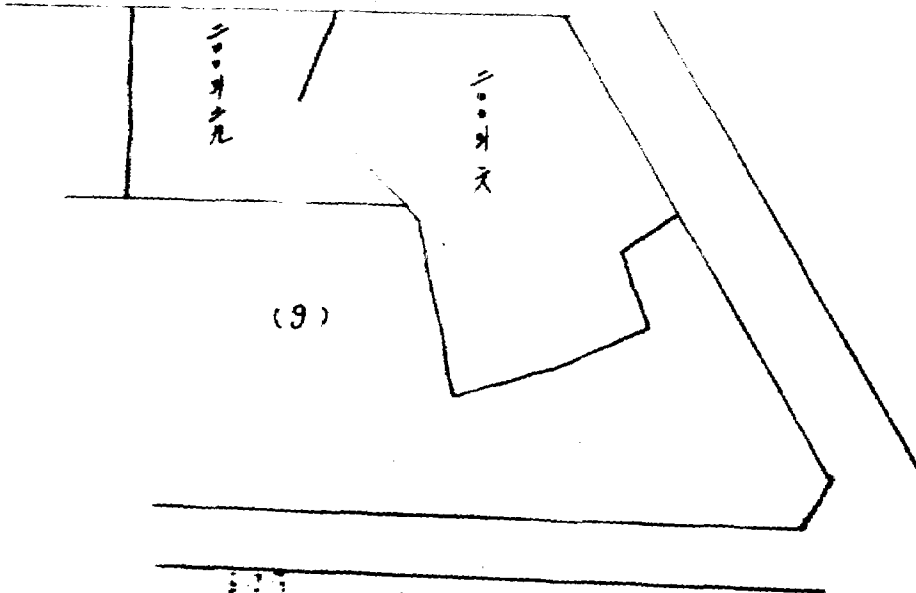
1964. 12. 5. 서울특별시 송인동 408호에서 관리처분한바
있던 동대문구 송인동내 송인동 200~6, 동 200~2호 관지
내 대지이 별지 송인동외 갈이 리덕을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 1. 송인동 1호
- 2. 관리변경소면 1면

변경 전



변경 후



144

144

8-5

93

同 意 書


工組代表示。工組已對整、改、東、河、工、業、組、織、200-6。

空 285. 70 坪

工組已對 285. 70 坪中 11. 70 坪用

社 部 補 正 控 製 以 資 更 正 的 具 議 政 司 同 意
附 下 列

1965. 9. 25.

任 市 東 河 工 業 組 織 270 坪
委 委 委 鈐 

중산 수출 건설

세 신 부

제경관 415 - 10960

1965. 9. 14.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도시계획국장

제목 환지면적 결정의뢰

1. 공문

가. 서도구 432.4-0024 (05.7.7)

나. 서도서 432.4-0027 (05.8.25)

2. 당초의 서도신리관화국 청사 신축공사의 지장이 대하여는 서도구 432.4-0024 (05.7.7) 회 원상대로 결정 수록중이라는 통지를 주신바 있어 그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청사 신축공사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것을 수살하여 원용의한다

3. 서도서 432.4-0027 (05.8.25) 로 기결 정경은 불가능하다는 전향과 결의되는 의외의 퇴색이온바 글서 또는 구두로 누카 설명한바와 같이 귀서 결정의 기속으로는 청사 신축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4. 국수가 취득한 대지를 사무 취급상의 착오라는 이유만으로 하등 권리가 있는 대지에 매수화 체결은 무당인 것으로 사료되며 원상대로 환원(정경)되지 않으면 청사 신축공사는 물론 당부 사무처리상에도 지장이 클것으로

판정 조처되어야 합니다

5. 국수지에 대한 환지 확정 통지는 국유재산법 제92조 제2항에 규정한 관리청장이 지체없이 통지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사



146
합서로 가림성기

도시계획국

등산 수출 건설

소관 제산의 본임보관령인 관할 사무서장이지만 통지 라프로서 당부에서 통지를 못받아 한지 확정에 대한 이의 신립도 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6. 특히 본 사업은 AID 카권으로 국가대 협정이 된것이며 관후 대지 문제가 시급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관 사업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중에 있는 식외전화 (마이크로유-브) 격입 문제가 국지적으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첨선합니다. 끝..

정리자	사무국장	사무과장	도사부장	사무장	사무장
[인]		[인]	[인]	[인]	[인]

정리자

사무국장

사무과장

도사부장

147 기림길